

	기금운용심의회규정	규정번호	3-8-13
		제정일자	2019.01.15.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행정지원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매 회계연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
② 위원은 교원, 직원, 학생, 외부전문가, 동문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외부 전문가는 회계 또는 재무 관련자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③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5조(서기) 심의회의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제6조(협조요청)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비밀유지)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무) 심의회의 사무 처리는 행정지원처에서 관장하며,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계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심의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